

 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온 정부
	2019년 3월 15일(금) 조간 (3. 14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담당부서	안전기획과	안전제도과	예방안전과	
담당자	과장 정윤한 서기관 박정호	과장 이형석 주무관 김승현	과장 지만석 사무관 조영호	
연락처	044-205-4110 044-205-4126	044-205-4140 044-205-4142	044-205-4510 044-205-4511	

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

-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, 강릉 펜션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.

□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*를 계기로,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**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.

* (피해 현황) 고등학생 사망 3명, 중상 7명 / (사고 원인)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

** 행안부, 산업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문체부, 복지부, 국토부, 소방청

○ 논의 결과, 앞으로 펜션 등*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(가스, 기름, 연탄 보일러 등)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.

* 농어촌 민박, 외국인관광 도시민박,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(단,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)

- 특히,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(교체 포함)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.

-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·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사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, 점검방법도 개선한다.

-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사 확인서류* 제출을 의무화하고,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일산화탄소 누출(우려)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.

* 시공사등록증(등록 여부 확인), 건설기술자 자격증(본인 여부 확인)

○ 아울러,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(표지), 휴대용 비상조명등,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,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하여야 한다.

□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.

○ 또한, 지난 1월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,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방안도 함께 논의한다.

□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.” 라며, “특히,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·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